

제2594호
2018. 08. 2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- 제2018-90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
- 제2018-91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

● 공 고

- 제2018-613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공고 5
- 제2018-617호 :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
- 제2018-626호 :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7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90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8월 29일
서울특별시중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1,536.2㎡ (대지 1,394.9㎡, 정비기반시설 141.3㎡)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시행자 : (주)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
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 경남빌딩 603-1
-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8월 22일
- 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 -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 이 (m)	용 도
1,394.9	908.92	저층 65.16 고층 49.44	11,773.53	699.91	지상15 /지하3	62	숙박시설, 근생시설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대상	건축시설							비고
	관광숙박시설		근린생활시설		기타			
	대지 면적	건축 연면적	대지 면적	건축 연면적	대지 면적	건축 연면적		
계	1,355.8m ²	11,443.53m ²	39.10m ²	330.0m ²				
토지등 소유자	700.74m ²	5,914.58m ²	39.10m ²	330.0m ²				
일반 공급	655.06m ²	5,528.95m ²						

3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 설					용도폐지				
종류	명칭	규모 (m ²)	설치 비용	관리청	종류	명칭	규모 (m ²)	국 공유지 (m ²)	무상양여 (m ²)
도로	소2-6	48.5	시행자	서울시중구	도로	도로	98	98	72.5

사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사전 철거 완료

아. 관계서류 : 생략 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)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91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8월 29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58-8	2018.08.29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5길 18	2018.08.29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-613호

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공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12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29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중구 금고지정 사항

- 금고의 수 : 단수금고
- 지정 금융기관 : (주)우리은행 (대표 : 손태승)
- 취급회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

2. 선정방법 : 일반공개경쟁방법

3. 금고약정기간 : 2019. 1. 1 ~ 2022. 12. 31(4년)

4. 금고 취급업무

- 구세,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,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-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
- 기타 금고업무 취급 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

5. 문의사항 : 중구청 재무과 (☎3396-5032)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-617호

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7호(2007.5.25.)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1호(2010.3.18.)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83호(2018.8.1.)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고시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에게 본 공고 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5) 및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(☎2231-9559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8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8.8.30. ~ 2018.9.12.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5) 및 조합사무실(☎2231-9559)

다. 사업시행계획(요지)

- 1) 사업명칭 :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중구 청구동 321번지 일대
- 3) 시행면적 : 58,439.3㎡
- 4) 시 행 자 :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강기석)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
- 6) 건축계획 : 아파트 14개동 1,215세대(임대아파트 183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- 7) 정비기반시설 : 도로 7,979㎡, 공원 3,699.3㎡, 공공청사 1,306㎡

라. 관계도서 : 생략(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도서와 같음)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-626호

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24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제14조 ~ 제16조에 따라 「서울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」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년 8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(㎡)	아동현황 (정원)	개 원	비 고
신 당 동 어 린 이 집	중구 청구로8길 41 (신당동 304-720)	933.78㎡ (지하1/지상4)	124명	84.12.11.	시간연장 24시간

2. 위탁 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

3. 신청 자격

가. 법인 또는 단체 :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나. 개인 :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단,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)

다. 공통 : 운영체의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

4. 신청 제외 대상

가.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
다.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라.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
마.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
5.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18. 8. 30.(목) ~ 2018. 9. 18.(화)

나. 접수기간 : 2018. 9. 12.(수) ~ 2018. 9. 18.(화) 18:00까지

다. 접수장소 : 중구청 여성가족과 (본관 1층)

- 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월~금, 09:00~18:00)
(※토요일 · 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
마. 제출서류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	비고
		법인	단체	개인	
개별사항	■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(법인 인감증명서 첨부)	○			
	■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	
	■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	
	■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			○	
공통사항	■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				※첨부의 제출서식 의거작성
	■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				
	■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				
	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				
	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				
	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				
	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합산)				
	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				
	■ 자부담 승낙서				
	■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				
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					

바.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, 요약서 (18부, 3~5페이지 분량)

※ **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**
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라벨 표시, 반드시 제본
-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18. 9. 21.(금) 18시까지 e-mail 제출

6. 사업설명회 : 생략

※ 구청방문시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,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

7. 위탁조건

- 가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- 나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 · 장애아 · 시간연장 · 다문화아동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

- 다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- 라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- 마.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『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계약서』로 별도 계약 체결

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- 가. 선정방법 :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
(※ 심사일은 별도 통지)
- 나. 심사항목 : 5개 분야
 -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
 - ※ 「2018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신규·변경)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」 참고
- 다. 면접방법 :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(PPT발표)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(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- 라. 결과발표 :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

9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**제출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**
- 나.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- 다.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라.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- 마. 법인·단체(개인)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.
- 바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
- 사.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고시/공고」에 공고문과 게재 함
- 아.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(3~5페이지 분량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(☎02-3396-5412)로 문의